

제333회 정례회
교육위원회

「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개정 촉구 건의안
(최호정 의원 대표발의)」

제 안 설 명

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최호정
(국민의힘, 서초4)

□ 교육위원회 선배 · 동료 위원 여러분!

서초구 제4선거구 출신

국민의힘 최호정 의원입니다.

□ 오늘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,

31명의 동료의원들께서 동참해주신

「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」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한

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

□ 먼저 건의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

말씀드리겠습니다.

□ 현행 「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」 제11조는

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에서 교육비특별회계로의

전출을 의무화하여 지방자치단체 내 재원 배분을

강제하고 있습니다.

□ 특히 서울시에만 적용되는 10% 전출 규정은

지방자치단체 간 형평성에도 어긋날 뿐 아니라

과도한 재정부담을 초래하고 있습니다.

- 이에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황과 교육 수요를 반영한 합리적인 차등 전출 원칙을 적용하고 탄력적인 재원 배분이 가능하도록 자치 입법 재량권을 보장하는 법의 개정을 촉구하고자 합니다.

 -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, 건의안의 취지를 잘 살피셔서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.
- 감사합니다.